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5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5301 조세채무부존재확인
원고, 항소인	재단법인 [redacted]재단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6구합2276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2. 8.
판 결 선 고	2017. 12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2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0,624,000원(가산세 포함), 지방교육세 26,062,40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13,031,20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5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

가.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9행 중 "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"을 "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"으로 수정한다.

나.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.

원고는 당심에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해제되었을 뿐이고, 설령 이를 약정해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제적 실질이 소멸한 이상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2750 판결,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)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5-25

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수제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